

IT와 저작권법상 복제

2025.04.08

텔레칩스 지식재산권팀

연지영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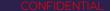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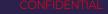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 01. Intro
- 02. 저작권 권리의 다발
- 03. 저작권 침해 판단
- 04. 복제권과 오픈소스
- 05.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
- 06. 복제권과 AI학습데이터

Intro – 오픈소스 담당자로써 발생하는 고민





오픈소스 식별 판단



실행 중 발생하는 복제



AI학습데이터 저작권

저작권 권리의 다발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 (저작권법 제2조)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저작물의 전부를 그대로 베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서 양적인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 비문언적 표현을 복제한 경우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복제로 인정된다.

"일시적 복제"란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이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2)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2019), 박영사, p538

저작권 침해 판단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 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자신의 작품을 작성하였을 것
- 피고의 작품와 원고의 저작물 사이에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여야할 것

실질적 유사성이란?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복제의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더라도 복제의 정도가 실질적이지 않다면 법적으로 이를 복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유사한 정도가 실질성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얼마만큼 서로 유사하여야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질적 유사성 비교 제외 요소

- 1) 방식, 아이디어 (문자로 나타낸 표현을 보호)
- 2) 창작의 도구
- 3) 외부 기준에 의한 제한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산업형태 및 프로그래밍 관행에 따른 제한
- 4) 전형적이고 관용적인 구문
- 5)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표현 -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표현하게 되는 가장 효율적인 표현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 필수장면의 원칙)
- 6) 의미없는 빈 공란, 주석, 자동생성 코드 등

김시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 p59-60, 79-81

복제권과 오픈소스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이용하되 원저작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복제물'에 불과하다.

※ 갑이 원저작물 A의 저작자이고, 을이 2차적저작물 AB를 작성하였는데, 병이 AB를 무단 복제한 경우 갑은 병에 복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배포'의 개념에는 유형물의 형태로 양도 또는 대여만 포함되고 저작물의 무형 적 전달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웹사이트에서 음악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스트리밍 방식 등에 의한 제공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전송''에 해당할 뿐 저작권법상 배포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2019), 박영사, p248, 596

복제권과 오픈소스

SCA 도구

SCA(Software Composition Analysis)는 오픈소스와의 정량적 유사도 및 복제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

실질적 유사성 판단 도구 X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 X

코드에 대한 창작성 판단 X

정량적 유사도 - 우리나라 판례 기준

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 유사도 (O ~ 49.76%)

0.24%, 1.2~18.2%, 3.22%, 3.72%, 11.5%, 12.11%, 16.2%, 32.2%, 49.76% 등

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판결 유사도 (76.06 ~ 100%)

100%, 97.2%, 81.41%, 76.06% 등

김시열,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p124-125

오픈소스 식별시 비교 제외 요소

- 1) 전형적이고 관용적인 구문
- 2) 누가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표현
- 3) 의미없는 빈 공란
- 4) 주석 (Header)
- 5) 자동생성 코드 (autogenerated file / code, autoconf)
- 6) 짧은 코드 (snippet)

생각해 볼만한 문제

저작물이 아니어도 수집, 분류, 선택, 배열한 편집물이 저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AI수로부인처럼 짧은 코드나 자동생성코드 등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들이 합쳐졌을 때 편집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까?

오픈캡쳐

서울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나19891,19907,19914, 19921 판결(상고)

6.7버전 실행

7.0 업데이트창팝업

자동으로 유료버전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확인버튼 클릭 후 버전 설치

업데이트 완료 후 라이선스 약관 동의 창 팝업

최종 확인 클릭

설치완료 (프로그램실행-일시적복제)

배경

- 원고('오픈캡쳐(Open Capture)' 의 사용자)들은 피고(동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 상채무가 존재하지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기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 오픈캡쳐는 6.7버전까지는 무료로 제공되었으나, 7.0부터 '기업용 라이선스'로 유료화 되었다.

주요쟁점

- 첫째, 원고들의 직원이 업데이트를 통해 오픈캡쳐 유료버전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복제권을 침해하였는지
- 둘째, 원고들의 직원이 오픈캡쳐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저장의 방법으로 복제권을 침해하였는지

오픈캡쳐 사건은 프로그램의 설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약관이 제시되었고,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하는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과는 다른 사건이다.

문선영,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의한 일시적 복제의 허용범위 -최근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포함하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88호 (2019.10.), p 57-58.

오픈캡쳐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891, 19907, 19914, 19921 판결(상고)

판결

-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 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복 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 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 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나아가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고 함으로써, 오픈캡쳐 유료버전의 실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규정하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 자체는 저작권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제·공연·공중송신 등 저작물의 구체적인 이용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애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실행권'이라는 유형의 저작재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변론으로) 컴퓨터 실행 자체는 언제나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 2단서의 해석론상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역시 별도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송재섭, 컴퓨터프로그램실행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오픈캡쳐(OpenCapture)'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2015 기을호 (2015.), p 152

동시사용 라이선스 사건

대법원 2018.11.15선고 2016다 20916 판결

배경

- 원고는 'ILM' 소프트웨어(이하 원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업자이고, 피고2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며, 피고1은 피고2의 자회자로서 피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법인이다.
- 본 사안에 있어서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컴퓨터에 실행되어 있으나 실제 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휴면상태의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시킴으로써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 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라이선스를 반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종료되지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램(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된 상태로 남게 되어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서 새롭게 실행 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개별 사용자는 피 고 소프트웨어의 재구동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작업 중인 데이터를 잃지 않게 되며, 무엇보 다도 라이선스의 순환이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종료되지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램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된 상태로 남게 되어 결국 이용허락된 최대 동시 사용자 수를 초과하 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램(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과정에 서 피고2로부터 라이선스 받은 최대 동시사용자수를 넘는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게 될 수는 없었고, 위 과정에서 원고 소프트웨어는 피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라이선스 관 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다.

문선영,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의한 일시적 복제의 허용범위 -최근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포함하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88호 (2019.10.), p86.

동시사용 라이선스 사건

대법원 2018.11.15선고 2016다 20916판결

판결

• 대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작권자(피고2)가 약정한 최대 라이선스 수를 넘는 일시적 복제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소프트웨어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작동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고, 피고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컴퓨터의 램(RAM)에 복제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은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 원고 소프트웨어로 인해 '최대 라이선스의 수'가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구매할 라이선스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해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원고 소프트웨어는 피고2의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판시하였다.

저작권의 이용과 사용개념을 준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은 저작권의 지분권과 무관한 사용행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 하다는 평가도 있다.

문선영,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의한 일시적 복제의 허용범위 -최근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포함하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88호 (2019.10.), p 59-60.

복제권과 AI 학습데이터

AI학습데이터의 저작물

| 보호받지 | •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
|---------|--|
| 못하는 저작물 | 여지가 없다. |
| 보호기간이 |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
| 만료된 저작물 |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 보호 저작물 |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저작 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 저작물 접근에 대하여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서는 물리적인 데이터가 서버에 복제되며, 서버 간에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권 한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학습 과정 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

Al학습데이터 생성과 저작권침해

| 데이터세트를 생성하는 과정 | •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복제, 전송,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
|--------------------------------|--|
| 데이터세트를 학습하는 과정 | 복제가 이뤄진다고 보는 견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기계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라 할지라도 일부 표현들은 복제물로 볼 수 있다. |
| | 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모든 데이터를 숫자로 치환하여 변환된 수치를 학습하는 구조에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외부적 "표현"이 인공지능 모델에 남아있거나 반영되었다고 어렵다. |
| 데이터세트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산출물 | 학습을 통해 생성한 산출물이 데이터세트의 원본과 실질 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복제권 침해 또는 2차적 저작물 작 성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전우성·노태엽, 인공지능 산출물과 학습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문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203호(2024.08), p206

복제권과 AI 학습데이터 - 공정이용

공정이용 원칙 판단 기준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공정이용의 네 요소는 각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요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종합평가를 거친다.

AI 학습데이터의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

AI 학습의 경우, 원저작물의 표현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또는 정보와 같은 비표현적 가치를 이용한 것이므로 변형적 이용의 항변이 가능할 수 있다. 즉,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색이나 개체 인식과 같은 비표현적 용도이므로 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달라 저작물을 복제·저장하는 등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공정이용 적용에 대한 비판

비표현적 방식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방법의 차이일 뿐,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한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 저작물을 학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의 네 번째 요소인 시장 또는 원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효용을 가진 생성물을 형성,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때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일호,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황과 과제 -판례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통권 141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23), p170.

복제권과 AI 학습데이터 - 공정이용

미국

• 미국 법원들은 공정이용의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 데이터마이닝의 경우 저작물 전부를 그대로 복제하였더라 도 시장에서 원저작물을 대체하지 않는다면 변형적 이용으로 판단, 원저작물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점을 주목함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봄

Google v. Oracle

- Google이 Android 개발을 위해 Oracle이 소유한 Jave SE의 API 패키지에 포함된 선언 코드를 복제
- 미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이용이 본질적으로 상업적임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복제코드를 재구성하여 스마트폰이 라는 새로운 환경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제작한 점,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새로운 제품 및 프로 그래밍 기회가 생성된 점 등을 고려하며 진보적이고 변형적인 이용이라고 인정.

Google v. Authors Guild

- Google의 북서비스에 대해 원작의 전체에 대해 검색을 제공하는 것은 변형적인 이용이며, 시장의 대체를 가져 오지 않는다며 공정이용으로 판단
- Google이 스캔한 책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보유자에게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프로젝트의 이점이 잠재 적인 해악보다 더 크다고 봄

미국 법원은 TDM과 관련하여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비소비적(bob-consumptive) 연구목적을 위한 도서의 TDM은 변형적 사용이며 공정사용에 따라 보호된다고 본다.

> 이상미, AI 학습데이터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p89-90 김윤명, 데이터 공정이용, 계간저작권 2023 봄호 (2023.), p 34

유럽, 일본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도입)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관련 면책 규정을 마련해 웹 크롤링(Web Crawling)과 같은 다량의 데이터 수집 작업을 부분적으로 허용

공정이용은 분야를 떠나 이용의 목적·성격 등을 고려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반해, TDM 면책 조항은 웹 크롤링 등 TDM 과정에서 불특정한 저작물이 수집되는 경우를 보호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점에 차이가 있음

LAION V. Kneschke

배경

• 크네슈케는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자동화된 콘텐츠 다운로드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AION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 데이터셋에서 자신의 이미지 제거를 요구

판결

LAION이 저해상도로 제공되고 워터마크가 있는 크네슈케의 이미지 사본을 다운로드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

- 비상업적 연구 기관에서 수행하는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 (독일 저작권법 제60조 d항 TDM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섹션 44bUrhG (비교학적목적의 TDM) 대신 **섹션 60d **UrhG (교학적연구목적의 TDM)을 적용
- LAION이 비영리 단체이며 데이터셋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생성되어 무료로 공개되므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 LAION이 상업적 기업과 협력하더라도 비상업적 연구 성격을 부정하지 않는다. (향후 산학협력 프로젝트에도 법적 보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https://www.wipo.int/wipolex/en/text/592042

